

무용계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가이드라인 해외사례 조사연구

한석진* · 윤지현**

I. 들어가는 말	IV. 나가는 말
II. 무용계의 성폭력 사례를 둘러싼 맥락적 이해	참고문헌
III. 무용분야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가이드라인의 사례 및 현황	Abstract

I. 들어가는 말

2017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올해의 인물로 ‘침묵을 깬 사람들(The Silence Breakers)’을 선정했고 이들은 바로 미투(#MeToo) 캠페인을 촉발시킨 사람들이었다. 10월 초 할리우드 제작자 하비 와이因斯坦(H. Weinstein)에게 성추행 또는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이 자신 역시 피해자였음을 잇따라 밝히면서 미투 캠페인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영화 산업계를 넘어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뻗어나간 이 운동은 뉴욕 시티 발레단의 발레 마스터인 피터 마틴스(P. Martins)가 성추문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무용계 역시 성폭력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사실 한국은 검찰 내부의 성폭력을 고발하면서 미투 캠페인이 사회 전반에 일어나기 1년 전부터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에 대한 공론화 움직임이 존재했다. 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의 ‘#문단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미술계_내_성폭력’을 포함한 타예술계로 퍼져나갔던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미투 캠페인이 진행되는 지금 또는 그 이전에도 국내 무용계는 타 예술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성폭력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미투 운동 진단 및 대안 마련 토론회에서 무용칼럼리스트인 윤단우는 무용계의 착취구조와 갑질문화라는 주제 아래 무용계의 침묵은 예술적 특수성과 구조적 폐쇄성에 기인한다고 지적한다.¹⁾ 몸을 주매체로 하는 무용수는 몸에 대

* 주저자,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강사, jinnysjhan@gmail.com

** 교신저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강사, jhydance@gmail.com

1) 윤단우(2018), 무용계의 침묵, 그리고 침묵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최민영(2018, 4, 19.), 성폭력 당한 줄도 모르고 말할 수도 없는 무용계,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1313.html, 2018. 11. 14.> 재인용.

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이 지도방식과 연계되면서 그 경계가 모호하게 되어 문제제기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가해자가 입시, 입상, 입단과 같은 문제에 계속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폭로 후 감수해야 할 피해가 너무 크다는 구조적 상황이 무용계에서 가스라이팅(gaslighting·심리나 상황을 이용하여 현실 인식과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일)이 강력하게 작동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2018년 3월 한국무용협회는 미투 운동이 성폭력 문제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권력을 이용한 폭력이나 차별에 대한 저항임을 밝히고 미투 운동에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댄스포스트코리아』에서는 2018년 2월부터 블랙페이지라는 이름으로 성폭력 문제를 포함한 무용계의 적폐 현상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 무용계가 자정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요구되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무용에서의 성폭력 개념과 규정에 대해 검토하고 해외의 성폭력 예방교육과 피해 지원체계 사례를 조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무용전공 중고등,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 및 언어폭력 실태조사²⁾가 이루어졌으나 이 연구들은 성폭력 경험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몇몇의 연구에서 스포츠 선수들의 파트너폭력 실태조사 내 성폭력 경험에 대해 부분적으로 다룬 바 있다.³⁾ 보다 본격적으로 무용계에서의 성폭력 문제를 다룬 연구로는 신주영과 김주희의 「무용에서의 인권교육의 필요성 재고와 대안 모색」(2017)⁴⁾이 있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의 무용인을 위한 인권, 특히 성폭력 문제 관련 제도적 현황을 살펴보고 스포츠 분야 인권연구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무용예술의 특수성을 반영한 성폭력 예방교육의 의무화와 대처장치 및 전문적 상담, 치료기관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신주영과 김주희의 연구가 발표된 이후 2017년 11월 여성가족부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특수성의 이해를 돕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와 지원기관 종사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법률적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문화예술계 성폭력의 특수성으로는 “고용구조가 아닌 일대일 관계에서 발생하는” 반면 “폐쇄적 인맥구조와 경제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신고로 이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진단한다. 문화예술분야 성폭력 피해자 지원 법률가이드는 고소준비 및 고소단계, 수사 및 재판단계, 사례유형 등으로 분류되었으며,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여성가족부의 대책 제작과 배포는 적절하고 필요한 행정실천이라 할 수 있다. 문화예술분야의 성폭력 행태와 사례는 다른 사회분야와 차별되는 특이성이 있고, 그 차이를 고려한 규정과 대응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문화예술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성폭력 대응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문화예술 장르별 상황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그 제한점이 제기된다. 문화예술분야를 구성하는 문학, 미술, 음악, 영화, 연극, 무용 등 개별 예술현장과 장르 특이성을 하나의 규정과 가이드라인에 담기는 무리

2) 이현진(2005), 무용전공학생의 신체·언어 폭력경험 실태 조사,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노정식(2009), 무용전공 예술고등학생의 언어폭력 경험과 자존감 및 무용연습정도의 관계, 『한국무용과학회지』 18, pp.1-19.

3) 김명자, 천은영(2014), 댄스스포츠참가자의 파트너폭력 실태 조사, 『한국무용과학회지』 31(1), pp.139-155; 이계운, 김미선, 장보라(2015), 댄스스포츠 파트너 폭력선수들의 스트레스가 운동중단과 대처방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과학회지』 32(2), pp.59-75.

4) 신주영, 김주희(2017), 무용에서의 인권교육의 필요성 재고와 대안 모색, 『예술교육연구』 15(4), pp.75-88.

가 있기 때문이다. 무용과 연극 등 공연예술인의 수련과정과 공연예술의 창작과정은 몸의 훈련에 기반을 두고 다수 참여자 집단의 공동 작업으로 진행된다. 반면 문학이나 미술 장르의 수련과 창작과정은, 1인 창작물이 다수를 접한다는 점에서 다른 특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예술장르별 현장의 특이성에 따른 성폭력 형태와 사례 또한 특이성을 상정하게 된다. 문화예술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성폭력 대응 규정과 가이드라인의 제작은 유의미한 진전임에도 그 제한점과 함께 개별 장르 상황에 기반을 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무용계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무용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자 지원체계에 관한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범위는 서유럽과 북미권의 무용전공 대학생 및 전문무용인을 포함한 전문(예비)무용수에 관한 사례로 제한하였다. 중고등과정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생과 지도자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하며 중등교육의 제도적 절차에 따라 피해 지원체계 역시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학생 및 전문무용수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과 차별화되기 때문이다. 연구는 크게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된다. 먼저 무용계의 성폭력 문제를 짚어보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맥락적으로 접근해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대학교 내 무용 관련학과 및 전문무용기관에서의 성폭력을 규정하는 방식과 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대처 절차 및 체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신체를 기반으로 한 예술영역에서의 성폭력 관련 국내외 연구물과 해외 대학교와 공연예술단체 및 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할 것이다.

II. 무용계의 성폭력 사례를 둘러싼 맥락적 이해

최근 『댄스매거진(Dance Magazine)』에 실린 로렌 윙겐로스(L. Wingenroth)의 기사 「#댄스투: 무용계는 성추행을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나?」⁵⁾는 무용분야의 성폭행 관련 규정과 지원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현장무용가들의 경험을 통해 제안하고 있다. 기사는 피터 마틴스의 성폭력과 관련하여 촉발된 무용분야의 미투 운동은 오랫동안 공개된 비밀이었던 무용분야의 성폭력 문제를 표면 위로 떠올린 것으로 평가한다. 그럼에도 무용분야 성폭력 문제의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밖에도 여러 다른 기사⁶⁾를 통해 전 세계를 강타한 미투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무용계에서 “침묵강령(Code of Silence)”⁷⁾이 존재하는 원인이 논의된 바 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원인은 무용의 주매체로서의 신체에 기인한다. 무용에서 신체는 항상 보여지는 대상이고 보

5) L. Wingenroth(2018. 5. 21.), #DancersToo: Is The Dance World Ready To Address Sexual Harassment?, *Dance Magazine*, <<https://www.dancemagazine.com/metoo-dance-2569127206.html>, 2018. 10. 20.>.

6) M. F. Forcier(2017. 5. 25.), Code of Silence: A call to action to address and prevent abuse in dance communities, *The Dance Current*, <<https://www.thedancecurrent.com/feature/code-silence>, 2018. 11. 14.>; I. Ghekiere(2017. 11. 10.), #Wetoo: What dancers talk about when they talk about sexism, *Rekto: Verso*, <<https://www.rektoverso.be/artikel/wetoo-what-dancers-talk-about-when-they-talk-about-sexism>, 2018. 11. 14.>; D. Georgiou(2017.12.15.), Speaking Out in Dance, *Theater Jones*, <<http://www.theaterjones.com/ntx/features/20171215154319/2017-12-15/Speaking-Out-in-Dance>, 2018. 11. 14.>; S. Burrows(2018. 7. 3.), #MeToo, Sexual Assault and the Arts, *Burnaway: The Voice of Art in the South*, <<https://burnaway.org/feature/metoo-sexual-assault-arts/>, 2018. 11. 14.>.

7) D. Georgiou(2017. 12. 15.),

는 사람은 교수자, 안무가, 그리고 관객이다. 신체를 올바르게 또는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한 훈련으로써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무용수들은 훈련과 성폭력의 경계를 구분짓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이것은 신체적 접촉만의 문제는 아니다. 신체에 관한 수치스럽고 모욕적 언행 역시 짙고 마르고 성적으로 매력적인 몸이 가지지 못한 자신을 깨우치게 하는 가르침의 일환으로 여길 수 있다. 즉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자신이 더 나은 무용수가 되기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인은 무용교육과 현장 내 권력 역학에 기인한다. 윙겐로스는 무용이 지니는 신체적 친밀성이 성폭력을 야기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교육현장과 예술현장 내부의 권력역학이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한다.⁸⁾ 그는 “무용계는 성적 학대가 일어나기도 전에 무용수를 무력하게 만드는 교육적 방법론이 있다”는 노스텍사스 대학의 무용교육 전문가인 로빈 레이크(R. Lakes)의 말을 인용해 무용수를 교육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다. 무용 수련 초기에 형성되는 스승에 대한 의존과 권위에 순종하는 태도가 학습기간은 물론 직업적 활동기간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직업무용단에서도 예술감독은 무용수의 배역과 출연 전반을 결정한 절대적 권위를 부여받으며, 무용수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권력관계의 극단적인 불균형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권한을 지닌 사람은 보통 중년 남성이 많은 반면 권력관계의 약자에 위치한 무용수는 어린 여성인 경우가 많다. 무용수로서 직업 수명은 짧은 편이고, 무용계는 좁다. 이로 인해 무용수들은 문제어나 골칫거리로 낙인찍히고 싶지 않고 일을 계속 하기 위해 성폭력에 대해서 함구하는 상황에 놓인다. 그 사례로 무대 위에서 성적으로 대상화된 모습이나 누드 장면을 여성무용수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강요한다거나, 이러한 역할의 수행을 거부할 경우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방식 등이 있다. 또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성관계를 요구할 때에도 직업과 관련된 활동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거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로, 프리랜서 무용수의 증가와 불안정한 직업 환경에서 침묵강령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윙겐로스는 무용분야의 직업환경이 프리랜서 무용수의 계약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무용수가 처해있는 불균형한 권력관계의 취약성은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한다.⁹⁾ 이러한 직업환경의 취약성이 성폭력을 포함한 출연조건과 작업조건 등 부적절한 대우에 적극적인 대응과 발언을 막는다는 것이다. 무용단과의 작업을 계약하는 독립 무용수들의 경우 고용주나 고용관계가 불명확한 탓에 무용수의 권리와 보고체계, 보호장치 등이 불분명해진다. 무용단과 같은 기관은 성폭력이 없는 공연환경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무용단 소속이 아닌 독립무용수에게까지 성폭력 관련정책을 소개하고,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에는 그 권한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무용계 성폭력 발생이 은폐되는 사각지대의 특이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의 다른 분야에서 성폭력을 막는 표준화된 예방 및 대응 방법을 무용분야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 실효성은 약할 수밖에 없다. 사회분야 전체 또는 문화예술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표준적인 정책이 무용분야의 특수한 요구를 해소할 수 없다. 이에 무용분야의 특이성을 반영한 정책 개발과 실행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8) L. Wingenroth(2018, 5, 21.), #DancersToo: Is The Dance World Ready To Address Sexual Harassment?, *Dance Magazine*, <<https://www.dancemagazine.com/metoo-dance-2569127206.html>, 2018, 10, 20.>.

9) Ibid.

III. 무용분야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가이드라인의 사례 및 현황

무용분야 성폭력 피해 지원은 성폭력이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의 하나라는 점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의 세부영역이자 구체적 사례로 분류될 수 있다. 이어 무용분야는 문화예술분야의 하위범주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문화예술분야 전체 대응과의 연계선상에서 관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용분야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가이드라인은, 인권침해의 보편적 관점에서 접근하되 문화예술분야의 특이성과 무용분야의 특이성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무용분야 성폭력 관련 규정과 대응방안을 서유럽 및 북미권 사례를 중심으로 수집 및 분석하고, 무용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무용학과가 속한 대학과 전문무용단체 또는 기관에 마련된 관련규정 및 가이드라인의 사례와 현황, 예비무용수인 무용학과 학생과 전문무용수를 위한 성폭력 방지교육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그간 국내의 무용계에서도 성폭력은 잘못된 것이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공감과 실천이 있었다. 무용분야의 기관, 단체는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통해 안전한 수련과정과 작업 환경을 조성해온 것으로 보인다. 다수 무용교육 기관과 무용단 등이 성폭력 관련 규정과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고등교육 무용관련학과 내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가이드라인 사례와 제한점

가. 미국 대학교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가이드라인

아마르 외 4인(A. F. Amar et al.)이 수행한 “성폭력에 대한 대학의 규정과 대응, 학생들의 방지교육 노력에 관한 관리자 인식”¹⁰⁾ 연구는 대학 성폭력 피해의 보고율이 낮다는 점을 포착하고 그 이유를 추적한다. 무용분야 성폭력 대응방안을 다루고자 하는 본 연구가 이 연구에 주목하는 이유는 국내 전문무용수의 양성과정 및 진로가 대학 무용교육과정과 긴밀히 연계되기 때문이다. 무용수 다수가 대학 무용과를 통해 배출되고, 무용분야에서의 활동에서도 동문, 동아리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대학 내 성폭력 대응방안의 개선점을 논하는 아마르 등의 연구는 본 연구의 연구 필요성과 목적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아마르 등의 연구는 성폭력 피해자, 생존자의 성폭력 보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성폭력에 대한 대학의 판결사례와 성폭력에 대한 대학 당국의 규정과 대응, 학생 대상 성폭력 방지 교육 등에서 찾는다. 이들은 2000년대 이후 미국 대학을 대상으로 수행된 성폭력 관련 연구를 인용하여 대학여성의 25%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¹¹⁾임에도 대학 당국에 4-8%, 경찰에 2%만이 보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의 낮은 보고율¹²⁾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더욱이 성폭력은 여성에게 부상이나 트라우마를 남기고

10) A. F. Amar, T. D. Strout, S. Simson, M. Cardiello and S. Beckford(2014), Administrators' Perceptions of College Campus Protocols, Response, and Student Prevention Efforts for Sexual Assault, *Violence and Victims* 29, pp.579-593.

11) Ibid, p.580.(B. S. Fisher, L. E. Daigle, F. T. Cullen and M. G. Turner(2003), Reporting sexual victimization to the police and others: results from a national-level study of college women, *Criminal Justice & Behavior* 30, pp.6-38 재인용; C. M. Rennison(2002), *Rape and sexual assault: Reporting to police and seeking medical attention, 1992-2000*(Washington, DC.: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재인용).

12) Ibid, p.579.(B. S. Fisher et al.(2000), *The sexual victimization of college women*(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재인용).

건강상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필요성을 강조한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대다수 대학에서 성폭력 대응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른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대학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있고, 규정에 따른 대학당국의 대응 노력이 병행됨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 성폭력 피해의 보고율은 낮다. 성폭력 피해의 낮은 보고율은 관련 규정과 실행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보았다. 이에 성폭력 피해의 보고율이 낮은 요인에 대해 성폭력 생존자 개인 차원과 제도적 차원으로 나눠 분석한다. 성폭력 피해자 개인의 차원에서는 성폭력 경험이 범죄라는 사실 인식의 부족, 공적인 노출을 피하고 싶은 바람, 범죄를 증명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등과 관계가 있으며, 제도적 차원에서는 피해자가 성폭력 판결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제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학의 성폭력 판결과정과 대응규정, 피해자에 대한 대응, 학생 대상 성폭력 교육 등에서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이들은 성폭력 피해자는 의료와 법리적, 심리학적 개입이라는 복합적, 학제적 개입을 요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의료적 측면에서 부상의 탐지와 관리, 성적으로 전이되는 감염의 검사와 처치, 피임 규정 등에서, 법적인 측면에서는 증거 수집과 법의학적 판정, 문서화와 법률서비스의 시작 등에서,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위기 개입과 지원 설명과 이어지는 실천이 요구됨을 확인했다. 이어 제언으로 피해자에 대응하는 대학 내 대응규정이 일관된 방식으로 수행될 때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됨을 강조한다.

나. 예술대학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가이드라인

위의 사례는 대학 내 일반적 가이드라인에 해당하였다면, 아래는 예술대학/학부 내 가이드라인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영국의 트리니티라반 음악무용원(Trinity Laban Conservatoire of Music and Dance)¹³⁾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은 USVreact(Universities Supporting Victims of Sexual Violence)¹⁴⁾ 공동조사 결과를 수용했다. USVreact는 런던 브루넬대학의 주도 아래 유럽의 6개 국가가 참여했으며, 성폭력 노출에 대응하는 대학교원의 훈련을 개선하고, 기관 내에 정착시킬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6년 3월에 시작되었으며, 2017년 11월 국제컨퍼런스로 끝났다. 연구팀은 ‘최상의 실행’에 대한 후기를 영어와 다른 언어로 소개하고, 학습된 내용을 문화와 기관의 맥락에 맞게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개발된 훈련 모델과 최종보고서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트리니티라반 음악무용원은 학생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홈페이지의 학생지원 내부에 “동의와 성폭력(Consent & Sexual Violence)” 란에는 ‘동의’와 ‘성폭력’의 정의와 상담지원 정보를 상세히 소개한다. 대학 당국에 소속된 교원, 교직원, 학생서비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상담 담당자 정보와 경찰, 시민단체 정보, 보고절차 및 양식 등이 상세히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가이드라인은 무용분야의 특이성이 반영된 것이기보다는 대학 일반 및 예술대학 전체의 성폭력 가이드라인으로 준용된 사례이다.

미국의 인디애나 대학교(Indiana University)의 연극, 드라마, 현대무용과는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13) Trinity Laban Conservatoire of Music and Dance, Consent and Sexual Violence, <<https://www.trinitylaban.ac.uk/student-life/student-support/consent-and-sexual-violence>, 2018. 10. 20.>.

14) USVreact, <<http://usvreact.eu/>, 2018. 11. 2.>.

개인과 그룹에게 불합리적으로 침해를 가하는 직장 및 교육환경을 만드는 교강사, 교직원, 학생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¹⁵⁾ 그중 성폭력의 경우, 불합리적으로 침해하는 직장 또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육체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특정한 성이나 성지향성에 대한 적대적 행동을 포함한 성적 행동패턴을 성폭력의 대상으로 지칭하고 있다. 학과는 폭력이 가해졌을 때 누구에게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지를 명시하고, 대학의 일반 절차에 따라 학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무용, 디자인 및 제작, 드라마, 영화제작, 음악 전공을 포함하고 있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University of North Carolina) 예술학부에서는 자체적으로 매우 구체적인 학생 행동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성폭력 개념 역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은 보상적 폭력과 적대적 환경 폭력으로 구분 지을 수 있으며 이것은 성적 위법행위와 성적 폭행을 포함하고 있음을 밝힌다.¹⁶⁾ 위의 두 학교가 마련한 성폭력 지원 가이드라인 역시도 공동 작업이 많고 신체적 행위가 많은 무용을 포함한 공연예술의 특수성이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영국의 연극학교 연합(Federation of Drama Schools)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가이드라인

위와 같은 맹점을 파악한 영국의 연극학교 연합¹⁷⁾은 연극학교 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쟁점을 다루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극학교 연합의 소속 기관은 동의된 윤리 가이드라인을 작동시킬 것이라고 밝혔다.¹⁸⁾ 연합에 소속된 20개 학교의 각각의 규정과 절차 및 가이드라인은 재검토될 것이며 필요하다면 조언과 견해를 제기할 것이다. 연극은 인간사이의 친밀한 환경 속에서 이뤄지며 항상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주요한 쟁점인 동의를 개념과 사후 대처 절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수업 내외 그리고 연습실에서 동의의 문제가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 및 불공평한 권력이 행사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이때 동의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적절한 대처방식을 무엇인지 알려주는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예방교육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자, 연출자, 무대 관계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라. 연극 또는 공연예술 전공학생 대상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 사례

연극학교연합의 성명서 발표와 비슷한 시점에 연극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실태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 공연예술전문지인 『더 스테이지(The Stage)』는 전문연극인과 연극전공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에 대

15) Indiana University The Department of Theatre, Drama, and Contemporary Dance, Harassment Policy, <<https://theatre.indiana.edu/student-portal/student-handbook/harassment.html>, 2018. 11. 14.>.

16)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School Of The Arts, Chapter VI: Student Code of Conduct, <<https://www.uncsa.edu/about/office-of-the-provost/handbooks/college-handbook/chapter-vi-student-code-of-conduct.aspx>, 2018. 11. 14.>.

17) The Academy of Live & Recorded Arts(ALRA), Arts Educational Schools London(Arts Ed), Birmingham Conservatoire, Bristol Old Vic Theatre School, Drama Centre London, Drama Studio London, East 15 Acting School, Guildford School of Acting(GSA), Guildhall School of Music & Drama(GSMD), Italia Conti Academy of Theatre Arts, London Academy of Music & Dramatic Art(LAMDA), The Liverpool Institute for Performing Arts(LIPA), Manchester Metropolitan University School of Theatre(MMU), Mountview Academy of Theatre Arts, Oxford School of Drama, Royal Academy of Dramatic Art(RADA), Rose Bruford College of Theatre & Performance, Royal Central School of Speech & Drama, Royal Conservatoire of Scotland, Royal Welsh College of Music and Drama.

18) G. Snow(2018. 4. 19.), Drama schools commit to ethical guidelines to tackle sexual harassment, *The Stage*, <<https://www.thestage.co.uk/news/2018/drama-schools-commit-ethical-guidelines-tackle-sexual-harassment/>, 2018. 11. 14.>.

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전체 설문 응답자인 1050명의 43%가 괴롭힘을 당했고, 31%가 성폭력을 경험하였으며, 8%에 가까운 인원이 성폭행을 경험했다고 답하였다.¹⁹⁾ 하지만 괴롭힘과 성폭력 경험한 이들의 대다수(67%)가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신고를 한 소수 중 70%의 경우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연극전공학생 응답자 중 36%가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으며 25% 가량이 성폭력에 노출되었다고 조사되었다. 학생의 경우 전문연극인에 비해 폭력 경험 비율이 낮으며 사후에 그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을 보았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즉 연극학교내 피해지원 가이드라인 체계가 현장에서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에 실시된 또 다른 조사는 영국의 배우조합(Equity), 음악가 협회(Incorporated Society of Musician), 음악가조합(Musicians' Union)에 의해 진행된 고등교육 내 음악, 연극, 무용전공 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 「학업에서의 존엄성(Dignity in Study)」였다.²⁰⁾ 조사결과, 응답자의 57%가 부적절한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고, 42%가 괴롭힘을 당했으며, 36%는 성차별을, 27%는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전체 응답자의 57%가 폭력이 행사되었을 때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경험한 응답자 중 57%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믿어주지 않거나 진지하게 다루지지 않을 것이라는 위협요인이 5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음(47%), 학교가 신고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을 것임(47%)이 그 다음 위협요소였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설문조사를 통해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성폭력 발생 시 대응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및 인지도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학교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대처 과정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지지 받을 수 있다는 신뢰성 문제임이 드러났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세 단체는 학교의 대응 체계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전적으로 다루는 상담자 배치, 무기명 신고, 신고의 정상화, 학생과 교수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등이 요구된다고 제안한다.

2. 전문무용수를 위한 성폭력 피해 지원 가이드라인 사례와 제한점

가. 뉴욕시 무용연맹(Dance/NYC)²¹⁾

뉴욕시 무용연맹은 미국 무용연맹(Dance/USA)과 연계되어 정책을 마련한다. 뉴욕시 무용연맹은 모든 형태의 추행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천명하고, 성추행 및 학대에 관한 개인의 이야기를 나눌 것을 권장한다고 밝힌다. 무용계에 오랫동안 존재했던 이들 사안을 공적으로 인지하고 예술과 작업인력을 위한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목적임을 밝힌다. 이를 위해 성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무용가와 교육자, 행정인력에게 관련 자료들을 제공하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소개한다.

뉴욕시 무용연맹 홈페이지의 무용가를 위한 자료실에는 성폭력 피해 및 예방을 위한 지원 자료들이 제공되고 있다. 성추행에 대한 뉴욕시 무용연맹의 입장을 밝힌 선언문, 추행반대 정책내용과 절차, 차별

19) G. Snow(2018, 1, 25.), Exclusive: Study reveals extent of harassment in theatre, *The Stage*, <<https://www.the-stage.co.uk/news/2018/exclusive-report-reveals-worsening-scale-harassment-theatre/>, 2018, 11, 14.>.

20) Equity, ISM and the Musicians' Union(2018), Dignity in study: a survey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https://www.ism.org/images/images/Dignity-in-study_ISMEquityMU.pdf, 2018, 11, 14.>.

21) Dance/NY, Sexual Harassment, <<https://www.dance.nyc/for-artists/resource-pages/sexualharassment/resources>, 2018, 10, 20.>.

및 추행반대 정책 내용에 대한 공지 및 확인 서식 3종이 있다. 이에 따르면 무용가들은 성폭력과 차별에 반대하는 무용연맹의 정책에 대해 듣고, 부적절한 대우를 받을 경우 이를 보고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미국 무용연맹 차원에서 무용분야 성폭력에 관한 규정과 피해자 지원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고, 무용가는 이 규정과 정책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뉴욕시 무용연맹의 이사회가 채택한 성폭력 대응 정책문에서는 성추행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성추행에 대한 규정과 범위는 사회분야 일반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성추행 행위는, 원치 않는 성적인 유혹이나 성적 호의의 요구, 성적인 성격의 언어적 신체적 접촉 등을 포함하는데, 이 같은 행위가 개인의 효과적인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위협적이고 냉담하고 불쾌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암묵적이거나 노골적으로 고용의 조건이나 보상이 되는 경우이다.²²⁾

성추행의 보고와 관련된 피고용자의 책임을 규정한 내용도 사회일반의 규정과 다르지 않다. 피고용자는 작업 계약 관계에서 무용가를 의미한다.

피고용자는 성추행이 없는 작업환경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성추행 사건을 목격했거나 또는 들어 알게 된 피고용자는, 집행이사나 이사회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집행이사나 의장은 보고된 사건을 알게 되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²³⁾

그럼에도 뉴욕시 무용연맹의 성추행 피해지원 가이드라인은 무용계에 준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무용연맹은 기관 소속 무용가와 독립무용가를 아울러 관련 정책과 가이드라인, 지원 정보의 고지를 공식화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로써 책임과 권리의 소재가 불분명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독립 무용가에게,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성폭력 관련 정책과 가이드라인 적용을 분명히 한다고 할 수 있다.

나. 벨기에의 예술가주도 ‘인게이지먼트(Engagement)’ 운동

2017년 11월 10일 벨기에 문예비평지 『렉토: 베르소(rekto: verso)』웹사이트에 무용가이자 연구자인 일세 게키에르(I. Ghekiere)는 벨기에 현대무용계에 성차별과 성폭력이 편재되어 있으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벨기에 유명안무가들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폭로하였다.²⁴⁾ 그녀가 누구를 지칭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2018년 9월 세계적으로 저명한 벨기에 안무가 얀 파브르(J. Fabre)의 무용단 트루블린(Troubleyn)의 무용수 20명은 동일한 잡지에 공개서한을 보내 얀 파브르가 수십 년간 권력 남용, 성차별, 성폭력을 일삼아 왔음을 고발했다. 웹사이트에 공개된 그들의 서한에 따르면 작품의 솔로 또는 주요 배역을 맡기 위해서는 그와 잠자리를 가져야 했으며 여성의 몸은 성차별적 비판의 대상이 되어 언어적 폭력이 일상적으로 일어났다고 말했다.²⁵⁾

벨기에 예술계의 성폭력, 성차별, 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모아 게키에르를 포함한 몇몇 예술가들은 ‘인게이지먼트’ 운동을 주도해 나갔다. 인게이지먼트 운동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벨기에 예술

22) Dance/NY, Dance/NYC's Sexual Harassment Policy, Board Adopted, <<https://www.dance.nyc/uploads/DanceNYC%20Sexual%20Harassment%20Policy.pdf>, 2018, 11, 5.>.

23) Ibid.

24) I. Ghekiere(2017, 11, 10.).

25) (Former) Employees and Apprentices at Troubleyn(2018, 11, 13.), Open letter: #metoo and Troubleyn/Jan Fabre, *Rekto: Verso*, <<https://www.rektoverso.be/artikel/open-letter-metoo-and-troubleynjan-fabre>, 2018, 11, 3.>.

계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탄압의 연계망의 근거인 폭력과 차별의 증언을 수집했으며 이를 통해 권력 남용이 되풀이되고 있으며 체제의 문제임을 밝혔다.²⁶⁾ 체제에 근간한 폭력을 종결하기 위해 그들(예술가, 기관, 예술교육자, 관객, 용납되지 않은 행동을 한 사람)의 참여를 독려한다. 동시에 예술계에서 활동하는 사람과 고용자에게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²⁷⁾

예술계 종사자가 성차별, 폭행, 폭력을 경험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예술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경험을 공유하고 싶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술계 밖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려주고 있다. 또한 고용자, 단체 및 기관의 경우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제안하고 있다. 1) 건강한 직업환경, 존중하는 직업관계, 윤리적 리더십을 우선시 여기며 어떠한 폭력과 폭행을 간과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2) 문제와 관련한 사안들을 동료들과 공유하여 금기시되는 것을 막고 개방적인 투명한 문화를 조성한다. 3) 소속직원의 주도로 권력을 가진 이의 참석이 없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4) 한명 또는 그 이상의 신뢰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도록 투자한다. 5) 문제와 관련한 법적 맥락을 이해하고 소속직원 또는 프리랜서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벌어진다면 신고를 신중하게 처리하고 기관 내 내부적 절차에 따르도록 한다. 이 절차는 법에 의거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적 조언과 심리지원을 제공하도록 한다. 인게이지먼트 운동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지원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뉴욕시 무용연맹과 같이 사건이 해결되도록 개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현장예술가들이 사후 대처 방식을 알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고용자는 예방을 위한 제도적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IV. 나가는 말

본 연구는 무용계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해 서유럽과 북미 등 해외사례를 검토했다. 주제와 관련하여 무용계 성폭력 발생과 대응의 특이성을 맥락적으로 진단하고, 대학교 내 무용관련 학과와 전문무용기관에서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제도를 살펴봤다.

무용계 성폭력 발생과 대응의 특이성으로 첫째, 권위에 순종하는 교육방식이 무용계 내부에서 성폭력을 비롯한 무용수에 대한 부적절하고 부당한 대우에 침묵하게 하는 문화를 양산한다는 점, 둘째 프리랜서 무용수가 증가하는 무용계의 직업환경, 곧 비공식적 연결망이 중요한 가운데 극단적인 경쟁상황과 직업을 잃거나 배제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관련이 있다는 점 등이 지목되었다. 무용분야의 경우 성폭력 의제와 관련하여 흔히 교육 및 공연제작 과정에서의 빈번한 신체접촉이 주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신체 접촉이라는 장르적 특수성 못지않게 부당한 권위에 순응하는 문화와 경쟁이 심한 직업환경의 문제가 특이성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무용계의 특이성이 반영된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가이드라인의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무용분야 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한 정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무용계 성폭력 실태 및 현황조

26) Engagement, Statement, <<http://engagementarts.be/en/statement>, 2018. 11. 13.>.

27) Engagement, Tools & Links, <<http://engagementarts.be/en/tools>, 2018. 11. 13.>.

사에 기초한 무용계의 특이성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할 때 실질적이고 유효한 가이드라인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미 마련되어 있는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규정과 가이드라인의 보완이 요구된다. 무용분야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특이성을 반영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유럽과 북미사회의 경우 무용과를 포함한 공연예술 대학 등은 대학기관이나 무용조직과 연계된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그럼에도 성폭력 피해의 보고율이 낮다거나 적절한 대응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제도의 사각지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리랜서 무용가의 경우 협업, 동업 등 작업 계약의 복잡성으로 책임과 권리 소재가 불분명하고, 관련 사안의 보고체계와 절차 및 그 정보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이들이 성폭력 피해 보고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격려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제도에 대한 신뢰 형성이 중요함도 지적되었다. 이에 국내 무용계에서도 성폭력 예방 및 지원과 관련한 무용계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이들을 지원제도 안으로 포섭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성폭력 피해 지원체계와 현장처리과정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요구된다. 이는 기성 성폭력 예방 및 대응제도의 보완과 연계되는 제언이다. 대응절차에 대한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곧 기관역량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인해 신고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용분야 인력을 대상으로 기관 및 단체 단위별 성폭력 피해 지원체계와 절차에 대한 충분한 지원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신고 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관의 역량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요구된다.

넷째 무용전공학생 및 전문무용수, 현장의 대응인력, 무용분야 기관 단체의 지도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무용전공학생과 전문무용인력은 동료 관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권력구조 속에서 지도자 또는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 발생 및 피해가 진단된다는 점에서 무용계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 교육이 요구된다. 동시에 성폭력 피해 보고에 대한 기관 단체의 관리자의 대응력을 향상할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고발에 대한 대응은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 기관, 단체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에 맞는 성폭력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용분야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실천과 대안이 필요하다. 곧 무용분야의 여성 지도자 확충을 통한 여성의 대표성 확대가 요구된다.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무용분야의 인구학적 성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가 이에 비례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조직 특성과 관련하여 남성중심의 조직문화가 강고할수록 성폭력 피해의 발생빈도가 높다는 조사가 있다는 점에서 무용분야 여성의 대표성 확대는 중요한 대안이 된다. 무용단과 문화예술 관련 기관 등에서 여성의 이해와 관점이 반영된 정책결정을 위해 보다 많은 여성 지도자의 양성과 확충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명자, 천은영(2014). 댄스스포츠참가자의 파트너폭력 실태 조사. 『한국무용과학회지』, 31(1): 139-155.
- 노정식(2009). 무용전공 예술고등학생의 언어폭력 경험과 자존감 및 무용연습정도의 관계. 『한국무용과학회지』, 18: 1-19.
- 신주영, 김주희(2017). 무용에서의 인권교육의 필요성 재고와 대안 모색. 『예술교육연구』, 15(4): 75-88.
- 이계윤, 김미선, 장보라(2015). 댄스스포츠 파트너 폭력선수들의 스트레스가 운동중단과 대처방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과학회지』, 32(2): 59-75.
- 이현진(2005). 무용전공학생의 신체·언어 폭력경험 실태 조사.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mar, A. F., T. D. Strout, S. Simson, M. Cardiello and S. Beckford(2014). Administrators' Perceptions of College Campus Protocols, Response, and Student Prevention Efforts for Sexual Assault. *Violence and Victims*, 29: 579-593.
- Fisher, B. S., Daigle, L. E., Cullen, F. T., & Turner, M. G.(2003). Reporting Sexual Victimization to the Police and Others: Results from a National-level Study of College Women.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0: 6-30.
- Fisher, B. S., Cullen, F. T. & Turner, M. G.(2000). *The Sexual Victimization of College Women*.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Rennison, C. M.(2002). *Rape and sexual assault: Reporting to Police and seeking medical attention, 1992-2000*. Washington, DC: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 최민영(2018. 4. 19.). 성폭력 당한 줄도 모르고 말할 수도 없는 무용계.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1313.html, 2018. 11. 14.>.
- (Former) Employees and Apprentices at Troubleyn(2018. 11. 13.). Open letter: #metoo and Troubleyn/Jan Fabre. *Rekto: Verso*. <<https://www.rektoverso.be/artikel/open-letter-metoo-and-troubleynjan-fabre>, 2018. 11. 3.>.
- D. Georgiou(2017. 12. 15.). Speaking Out in Dance. *Theater Jones*. <<http://www.theaterjones.com/ntx/features/20171215154319/2017-12-15/Speaking-Out-in-Dance>, 2018. 11. 14.>.
- Dance/NY. Dance/NYC's Sexual Harassment Policy, Board Adopted. <<https://www.dance.nyc/uploads/DanceNYC%20Sexual%20Harassment%20Policy.pdf>, 2018. 11. 5.>.
- Dance/NY. Sexual Harassment. <<https://www.dance.nyc/for-artists/resource-pages/sexualharassment/resources>, 2018. 10. 20.>.
- Engagement. Statement. <<http://engagementarts.be/en/statement>, 2018. 11. 13.>.
- Engagement. Tools & Links. <<http://engagementarts.be/en/tools>, 2018. 11. 13.>.
- Equity, ISM and the Musicians' Union(2018). Dignity in study: a survey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 <https://www.ism.org/images/images/Dignity-in-study_ISMEquityMU.pdf, 2018. 11. 14.>.
- G. Snow(2018. 1. 25.). Exclusive: Study reveals extent of harassment in theatre. *The Stage*. <<https://www.thestage.co.uk/news/2018/exclusive-report-reveals-worsening-scale-harassment-theatre/>, 2018. 11. 14.>.
- G. Snow(2018. 4. 19). Drama schools commit to ethical guidelines to tackle sexual harassment. *The Stage*. <<https://www.thestage.co.uk/news/2018/drama-schools-commit-ethical-guidelines-tackle-sexual-harassment/>, 2018. 11. 14.>.
- I. Ghekiere(2017. 11. 10.). #Wetoo: What dancers talk about when they talk about sexism. *Rekto: Verso*. <<https://www.rektoverso.be/artikel/wetoo-what-dancers-talk-about-when-they-talk-about-sexism>, 2018. 11. 14.>.
- Indiana University The Department of Theatre, Drama, and Contemporary Dance. Harassment Policy. <<https://theatre.indiana.edu/student-portal/student-handbook/harassment.html>, 2018. 11. 14.>.
- L. Wingenroth(2018. 5. 21.). #DancersToo: Is The Dance World Ready To Address Sexual Harassment?. *Dance Magazine*. <<https://www.dancemagazine.com/metoo-dance-2569127206.html>, 2018. 10. 20.>.
- M. F. Forcier(2017. 5. 25.). Code of Silence: A call to action to address and prevent abuse in dance communities. *The Dance Current*. <<https://www.thedancecurrent.com/feature/code-silence>, 2018. 11. 14.>.
- S. Burrows(2018. 7. 3.). #MeToo, Sexual Assault and the Arts. *Burnaway: The Voice of Art in the South*. <<https://burnaway.org/feature/metoo-sexual-assault-arts/>, 2018. 11. 14.>.
- Trinity Laban Conservatoire of Music and Dance. Consent and Sexual Violence. <<https://www.trinitylaban.ac.uk/student-life/student-support/consent-and-sexual-violence>, 2018. 10. 20.>.
-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School Of The Arts. Chapter VI: Student Code of Conduct. <<https://www.unca.edu/about/office-of-the-provost/handbooks/college-handbook/chapter-vi-student-code-of-conduct.aspx>, 2018. 11. 14.>.
- USVreact. <<http://usvreact.eu/>, 2018. 11. 2.>.

논문투고일 2018. 11. 15

심사일 2018. 11. 23

심사완료일 2018. 12. 05

A Study on Oversea Cases of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Training and Policies in the Dance World

Han, Seok Jin* · Yoon, Ji Hyun**

Lecture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exual harassment in the dance world has finally come to the surface in the wake of the MeToo movement although there was no outpouring of allegations in dance when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and arts fields. Faced with the necessity of a dance-specific guideline for preventing and addressing sexual harassment, this article examined the cases of sexual harassment training and policies in dance, focusing on higher education and professional contexts in Western Europe and North America. It contextualized the reasons of silence about sexual harassment in the dance world and delved into its guidelines within dance professional an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Based on the result, we suggested conducting a survey into sexual harassment in the dance world; reviewing the existing guidelines in light of the dance-specific circumstances; gaining credibility to take concerns seriously and make quick and proper responses; offering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training opportunities to all; and decentralizing a male-dominated power structure.

Keywords: Dance world(무용계), Higher education(고등교육), MeToo movement(미투운동), Sexual harassment(성폭력), Sexism(성차별)